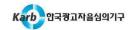


2024. 2월 심의결정 통계

1. 업종별 심의내용

결정구분 업종	계	주의 및 경고	광고수정	주의 · 경고 및 광고수정	광고중지	관계기관 통보	기각
기초재	0	0	0	0	0	0	0
식품 ՝ 음료	29	0	5	24	0	0	0
가정용품	0	0	0	0	0	0	0
제약(의료기기)	12	0	0	0	12	0	0
건강관련용품	7	0	5	2	0	0	0
화장품 ` 세제	7	0	7	0	0	0	0
일반산업기기	1	0	1	0	0	0	0
정밀사무기기	0	0	0	0	0	0	0
전기ㆍ전자	0	0	0	0	0	0	0
수송기기	0	0	0	0	0	0	0
화학、공업	1	0	1	0	0	0	0
건설 · 건재	3	0	3	0	0	0	0
출판ㆍ교육	1	0	1	0	0	0	0
의류 ㆍ 섬유	0	0	0	0	0	0	0
유통	1	0	1	0	0	0	0
금융 ㆍ 보험 ㆍ 증권	0	0	0	0	0	0	0
서비스 ` 오락	3	0	3	0	0	0	0
관공서 · 단체	0	0	0	0	0	0	0
의료	53	0	0	0	53	0	0
그룹·기타	10	0	10	0	0	0	0
Й	128	0	37	26	65	0	0



2. 심의결정이유별 내용

결정이유	계		
공정성 · 윤리성 · 합법성 · 인간의 존엄성 · 진실성 위반 표현(4~7조)	128		
광고의 품위상실, 선정성 표현(8조, 18조)			
광고주 불표시(9조)			
소비자 오도 표현(10조)			
주장의 무입증(11조)			
추천, 보증(12조)			
자료 등의 인용(15조)			
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(16~17조)			
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(19조)			
소비자 조사(20조)			
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(22조)			
어린이 · 청소년, 어린이 보호(23조, 24조)			
경품·할인특매, 사행심 조장, 미끼광고(28조, 29조)			
광고물의 식별 불가능(30조)			
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1조)			
주류·담배광고의 부당표현(32조, 33조)			
효능효과 과신ㆍ과장(34조)			
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5조)			
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6조, 37조)			
금융·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8조, 39조)			
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(40조)			
학원,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(42조, 43조)			
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(44조)			
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45조)			
영화·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(46조)			
기타			
Л	358		

※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.